

CMS 이용계약서 공시사항

1. 기본사항

제정일	개정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2014.12.09	-	○ (2020.03.20)	○

2. 개정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해당 없음			

3. 담당부서명 : 개인금융업무부

금융결제원CMS 이용계약서

중국공상은행(이하 '갑'이라 한다)과 _____(이하 '을'이라 한다)는 금융결제원CMS(이하 'CMS'라 한다) 이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계약은 갑과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CMS를 을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계약의 전제조건)

- ① 본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CMS 이용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,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.
- ② 본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'CMS 이용약관'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며 'CMS 이용약관' 불이행에 따라 이용승인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.

제3조(서비스 이용범위)

을이 이용하는 CMS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
업 무 구 분		업 무 내 용	처리기일	희망여부
대 량 자 금 이 체 업 무	출금이체	각종 수납자금을 을의 고객 계좌에서 인출하여 을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	당일	<input type="checkbox"/>
			3일	<input type="checkbox"/>
	입금이체	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을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		<input type="checkbox"/>

제4조(이용계좌)

① 을은 CMS 업무처리에 필요한 계좌(이하 '계좌'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구분	계좌번호	예금주명	비고
출금이체			
입금이체			

② 을이 제1항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이 계약을 갑과 금융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갑과 금융결제원이 그 변경내용에 대한 전산등록을 마친 때에 계좌변경 효력이 발생한다.

제5조(고객수수료)

① 을은 CMS를 이용하는 대가로 다음과 같이 갑에게 고객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

구분	은행간 수수료		대고객 수수료		수수료 적용기간
	기준	적용수수료	기준수수료	적용수수료	
출금 이체	당 일	의뢰건당 40원	이체건당 160원	이체건당 원	20 년 월 일
		이체건당 260원			
	3 일	의뢰건당 20원			
		이체건당 120원			
입금 이체	이체건당 100원	이체건당 100원	이체건당 원		

② 을은 계좌를 통하여 고객수수료를 자동 지급한다. 갑은 출금이체의 경우 이체금액을 계좌에 입금할 때 고객수수료를 차감하여 입금하고, 입금이체의 경우 이체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할 때 고객수수료를 포함하여 출금한다.

③ 갑은 출금이체금액이 고객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계좌에서 해당 수수료를 인출한다.

④ 고객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변경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통지해야 하고, 을이 변경개시

일 2주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6조(계약기간)

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하며, 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,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다.

제7조(계약해지)

- ① 금융결제원이 을의 CMS 이용승인을 해지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.
- ②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결제원에 CMS 이용승인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을이 서비스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
 - 2. 을이 본 계약 또는 CMS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
 - 3. 기타 CMS를 계속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
- ③ 을은 갑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의 준용)
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과 CMS 참가은행이 별도로 정한 CMS관련 제규정, CMS 이용약관, CMS 이용지침서를 따른다

제9조(손해배상)

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합의관할)

본 계약에 관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0 일 월 일

계약지점코드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갑: 중국공상은행 지점장 (인)

을: (인)